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남편 전문직 갖도록 내조했는데 이혼할 경우 그 보상책은

〈문〉 저는 35세의 직장여성입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자로 미국 직장에 다니던 중 아무래도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야겠다고 5년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을 갖는 것이 우리 가정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고 믿고 제 나름대로 토요일까지 오버 타임을 자청하여 남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일년전에 법대를 졸업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변호사가 되도록 내조한 것이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지요.

〈답〉 귀하께서는 남편의 변호사 자격증에 관련된 학비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주 가정법 2641조에 의하면 결혼 기간중 한 배우자가 새로운 직종이나 미래의 경제적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다른 배우자가 일을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였을 경우 이러한 비용은 이혼할 때 재산분배과정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으로는 의과대, 법대, 치과대, 회계사 교육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으로는 학비, 연수비, 책값, 학용품비와 교통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부 공동 재산이나 개인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단 이러한 교육비 청구는 이러한 비용이 이혼 신청 시기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안에 소요되었으며 따라서 배우자의 새로운 전문직으로 인해 부부 혹은 가정 공동체가 큰 경제적인 혜택을 미처 누리지 못했다는 법적 가정의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전 액수가 청구자 배우자에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는 부부 공동 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배분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문 속성으로 받은 이혼 판결 무효라며 다시 돈을 요구하는데

〈문〉 저는 5년전에 이혼한 남자입니다. 당시 저와 전처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혼서류를 속성으로 대행해 주는 곳을 찾아가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라스베가스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 1년전 저의 부모님이 제가 작은 장사라도 하나 시작할 수 있도록 훗날의 유산을 미리 주신다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헤어진 전처가 갑자기 나타나 예전의 이혼판결문은 무효이니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을 반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간 이혼판결문이 무효라는 것은 또 뭘 말이고 이혼이 끝난 지 5년이 넘은 지금 저의 재산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 첫째, 라스베가스주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판결문은 귀하와 전처가 이혼 소송 당시 라스베가스 거주민이 아니었으므로 법적으로 무효이며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언제라도 해당 거주지의 가정법원을 통해 그 합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거주민이란 실제적으로 그 주에 살아야 하며

무한정한 기간 동안 그 주에 지속적으로 살며 머무를 의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부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이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간 또한 해당 카운티에 3개월간 거주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신청당시 부부 두 사람 모두 캘리포니아 거주자였으므로 네바다주 법원이 귀하의 이혼 소송을 처리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설사 네바다주 법원의 이혼판결문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해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후부터 별거일까지 부부중 어느 한 쪽에 의해서 취득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가정하나 결혼기간 중이라도 유산·증여·상속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나 별거 후 취득된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께서 주신 돈은 전처와 별거 후에 유산에 대응하는 몫을 미리 주신 것이므로 전처가 그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이혼에 따른 배우자 생활 보조비 책정 기준은

〈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에 따른 배우자 생활 보조비 액수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답〉 이혼에 따른 배우자 생활 보조비의 책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그 액수나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결혼 기간 중에 유지되었던 생활 수준이 이혼 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입니다. 둘째, 판사가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가주 가정법 4320조에 열거된 조건들로서, 양 쪽 배우자의 수입, 배우자 보조 생활비를 요청하는 자의 교육수준, 직업기술, 아니면 혼자 경

제적으로 지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교육의 필요 여부성, 배우자 생활비를 요청하는 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수입 능력에 직결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기여한 공로, 배우자 생활비를 내게될 자의 경제적 능력, 결혼기간 누렸던 생활수준,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재산과 부채액수, 결혼기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취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외에 판사 재량에 따라 공정성을 위한 다른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낯동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 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